



제...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장 위원회 구성

제2장 심의·의결 절차

제3장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 설치·운영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선거기사(사설, 논평,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2019년 12월 16일부터 선거일 30일 후인 2020년 5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설치·운영되었다.

■ 역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구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0. 2. 25. ~ 2000. 5. 13.	2000. 4. 13.	2000. 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2. 14. ~ 2002. 7. 13.	2002. 6. 13.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8. 21. ~ 2003. 1. 18.	2002. 12. 17.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3. 12. 17. ~ 2004. 5. 15.	2004. 4.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6. 1. 31. ~ 2006. 6. 30.	2006. 5. 3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8. 21. ~ 2008. 1. 18.	2007. 12. 1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12. 11. ~ 2008. 5. 9.	2008. 4. 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2. 1. ~ 2010. 7. 2.	2010. 6. 2.	2009. 1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기간 변경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5. 29. ~ 2010. 8. 27.	2010. 7. 28.	2010. 1.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재보궐선거시에도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2010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8. 28. ~ 2010. 11. 26.	2010. 10. 27.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2. 26. ~ 2011. 5. 27.	2011. 4. 27.	

구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고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8. 27. ~ 2011. 11. 25.	2011. 10. 26.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12. 12. ~ 2012. 5. 11.	2012. 4. 11.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2. 10. ~ 2012. 5. 11.	2012. 4. 11.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4. 22. ~ 2013. 1. 18.	2012. 12. 19.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10. 20. ~ 2013. 1. 18.	2012. 12. 19.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3. 2. 23. ~ 2013. 5. 24.	2013. 4. 24.	
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3. 8. 31. ~ 2013. 11. 29.	2013. 10. 3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2. 3. ~ 2014. 7. 4.	2014. 6. 4.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5. 31. ~ 2014. 8. 29.	2014. 7. 30.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8. 30. ~ 2014. 11. 28.	2014. 10. 29.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2. 28. ~ 2015. 5. 29.	2015. 4. 29.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8. 29. ~ 2015. 11. 27.	2015. 10. 28.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12. 14. ~ 2016. 5. 13.	2016. 4. 13.	
2016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6. 2. 13. ~ 2016. 5. 13.	2016. 4. 13.	2015. 8.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대선이 없는 해에는 재보궐선거 1회로 축소
2017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7. 2. 11. ~ 2017. 5. 12.	2017. 4. 12.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7. 3. 20. ~ 2017. 6. 8.	2017. 5. 9.	2017. 3. 10. 탄핵결정에 따라 조기에 대통령선거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8. 2. 12. ~ 2018. 7. 13.	2018. 6. 13.	
2018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8. 4. 13. ~ 2018. 7. 13.	2018. 6. 1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9. 12. 16. ~ 2020. 5. 15.	2020. 4. 15.	
2020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0. 2. 15. ~ 2020. 5. 15.	2020. 4. 15.	

2. 구성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언론학회(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언론인단체)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민단체)에서 추천받아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였다.²⁾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구분	성명	이력	추천단체	비고
위원장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위원장	김영철	(전)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위원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2019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황성현	황성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미래통합당	
	서명준	국립한국전통문화대학교 외래교수	민생당	
	정낙원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한국언론학회	
	허 윤	법무법인 예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상기	(전)한국기자협회 회장	한국기자협회	
	김홍국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겸임교수	언론중재위원회	2019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공직선거법 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였으나 이후 자유한국당은 미래통합당으로 바른미래당은 민생당으로 신설합당하였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 출범 시 위촉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추천 심의위원을 해촉(2020. 2. 18. / 2020. 2. 5.) 하고, 새롭게 교섭단체를 구성한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에서 심의위원을 추천받아 위촉(2020. 2. 28. / 2020. 4. 7.)하였으며 기존 위촉 심의위원과 동일 위원을 위촉하였다.
- 2)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2항 및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2020년 3월 새롭게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미래한국당에 선거기사심의위원 추천을 의뢰(2020. 4. 1.)하였으나 심의위원회 종료일(2020. 5. 15.)까지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래한국당은 2020. 5. 29. 미래통합당에 흡수 합당되었다.

3. 기능

심의위원회는 설치·운영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기사에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가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선거기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경우 및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선거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제재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결정해 언론사에 통보한다.

■ 심의위원회 제재조치 및 관련규정

제재조치	관련법률	관련규칙
정정보도문 게재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반론보도문 게재	동법 제8조의3제3항, 제8조의4	
경고결정문 게재	동법 제8조의3제3항	
주의사실 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앞줄 왼쪽부터) 이상기 위원,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채원호 심의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
(뒷줄 왼쪽부터) 권오근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정낙원·서명준·정민영·김홍국·황성현·허윤 위원

1. 자체심의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 담당부서인 심의2팀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이하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기사를 자체 모니터링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기준') 위반 소지가 있는 보도를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 기사의 내용과 해당 언론사 측 의견진술 등을 바탕으로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심의위원회는 결정 사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를 해당 언론사에 지체 없이 명한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한 차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시정요구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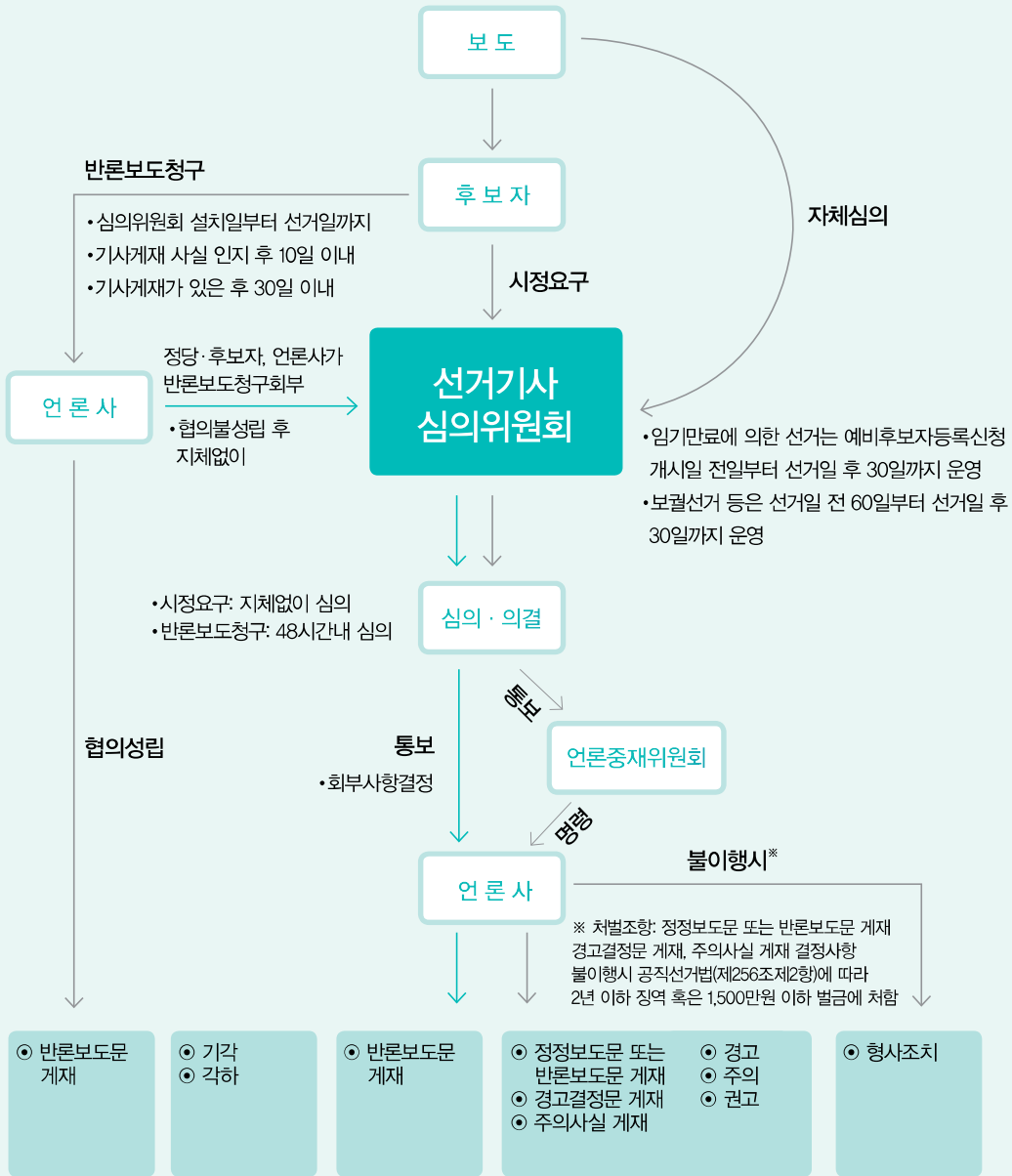
공직선거법 제8조의2제6항, 제8조의3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기간 동안 언론사에 불공정한 선거기사가 게재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 시정요구인의 요구사항과 언론사 측 의견진술을 토대로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의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제재결정을 내린다. 한편 시정요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한다. 결정 이후의 재심절차는 자체심의와 동일하다.

3.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4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 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정당 혹은 후보자)이나 언론사는 이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각'과 '각하' 결정을 하고 양측에 통보한다.

■ 심의·의결 흐름도



• 청구 받은 때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다음 발행호에 게재

재심청구

-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재심 청구는 1회로 제한한다.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등 선거기사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가 정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및 제8조의2 제4항).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기준’)을 통해 불공정한 선거기사의 유형을 구체화해 정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심의위원회는 후보자 홍보물 게재 등 최근 선거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는 새로운 위반유형들을 심의기준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 심의과정에서 기준 개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또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기고를 금지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에도 결정 취지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심의기준 개정을 위한 회의를 두 차례 열어 개정안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2020년 5월 15일 심의기준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개정된 심의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 일반 심의기준과 중복되는 심의기본원칙을 삭제하고 규정 적용대상인 ‘선거기사’의 대상을 추가

신 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제3항에 따른 신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한다.

▷ 공정성 및 형평성 관련 심의기준을 통합하고 위반유형을 재정비

현 행	개 정
<p>제4조(공정성) 제2조제1호의 공정성을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기사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기사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일방적, 의도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또는 기고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 <p>제5조(형평성) 제2조제1호의 형평성을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 또는 사실과 다르게 변형한 기사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기사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 	<p>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 1호에 준하는 경우 <p>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 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 세부 심의기준에 일반 선거기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기사유형에 따라 세부 심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신 설
<p>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거나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 10.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사이에 게재된 후보자 기고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제재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p>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3.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한 경우</p>	<p>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3.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칼럼 등을 게재한 경우</p>

▷ 제재 결정 외 필요한 조치로 안내문 송부를 추가

현 행	개 정
<p>제13조(제재결정 등)</p> <p>② 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13조(제재결정 등)</p> <p>② 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안내문 송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